##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84

발의연월일: 2024. 8. 1.

발 의 자:서영교·윤준병·박홍배

임오경 • 이기헌 • 강유정

조 국·한정애·위성곤

박해철 · 조인철 의원

(119]

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
그러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는바, 긴급지원 종료 후에도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 용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업무에 양육비 대지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그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차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개정함(안 제6조).
- 나.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함(안 제13조).
- 다.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신청, 지원결정, 지원기간, 지원종료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삭제).
- 라.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·재산, 신용·보험·금융에 관한 정보를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도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 및 제17조).
- 마. 제3장의2를 신설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9까지 신설).
- 바.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자

료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함(안 제23조).

- 사.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, 출국금지 요청, 명단 공개 업무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 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24조).
- 아. 양육비 채권자에게 대지급된 양육비와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 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(안 제26 조의2 신설).
- 자.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함(안 제27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6호(종전의 제5호) 중 "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위원회의"를 "위원회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여성가족부차관"을 "여성가족부장관"으로 한다.

- 5.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의 결정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4.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
  제13조제1항 중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·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1. 비양육부 · 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

- 2.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
-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 에 관한 정보자료

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6조제2항 단서 중 "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"을 "제2 1조의6에 따라 양육비가 지급된"으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"(금융정보등의 제공)"을 "(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)"으로 하고.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 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본문 중 "금융정보·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를"을 "금융정보등을"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"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"를 "제21조의6 에 따라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"로, "신용정보·보험정보를"을 "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 항에"를 "제2항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본문 중 "제2 항"을 "제3항"으로 하고.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본문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2항 및 제3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(종전의 제6항) 중 "제1항, 제2항 및 제4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"으로. "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"을 "금융정보등의 동의. 제공

요청"으로 한다.

-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·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.
- 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예금의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
- 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 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
- 3. 「보험업법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3장의2(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9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제3장의2 양육비 대지급

제21조의6(양육비 대지급)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대지급(이하 "대지급"이라 한다)을 신청할 수

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대지급 신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대지급은 미성년 자녀가 「민법」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.
- ④ 대지급의 신청 방법·절차, 제2항에 따른 대지급 결정의 통지 방법 및 금액,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대지급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.
-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대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,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제21조의7(양육비 대지급 종료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대지급을 종료하여야 한다.
  -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되는 등 대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의8(대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) ① 제21조의6에 따른 대지급에 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

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21조의9(양육비 대지급금의 반환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권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대지급 받은 경 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 다 만,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반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
 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, 양육비 채권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지급 양육비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여성가족 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,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.

- 1. 제10조, 제10조의2, 제11조, 제21조의6의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관한 사항
- 2.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
- 3.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조사에 관한 사항
- 4.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

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

- 6.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
- 7.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8.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4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권리의 보호)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된 양육비와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.

제27조제1항 중 "제17조제5항"을 "제17조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

2항제2호 본문 중 "「가사소송법」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"을 "「가사소송법」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"으로, "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"를 "이행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.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긴급지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벌칙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행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) ①	제6조(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) ①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・의	
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	
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(이하	
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5.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대
	지급의 결정
5.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위원회	<u>6.</u> 위원회의
의 위원장이 양육비 이행확보	
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	
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	
사항	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	②
함한 14명 이내의 비상임위원	
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<u>여성</u>	<u>여성</u>
<u>가족부차관</u> 이 된다.	<u>가족부장관</u>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	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
및 지원에 관한 법률	및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제7조(양육비이행관리원) ① ~ ⑤ (생 략)	제7조(양육비이행관리원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(경 역)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	(연영·F 崔音)

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~ 3. (생 략)
- 4.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

5. ~ 10. (생략)

(7) · (8) (생 략)

제13조(비양육부・모 또는 양육 제13조(비양육부・모 또는 양육 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 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•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게 비양육부・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·초본의 교부를 요청 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비양육부・모 또는 양 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대 지급
- 5. ~ 10. (현행과 같음)
- (7) · (8) (현행과 같음)

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) ① -----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.

- 1. 비양육부・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
- 2. 비양육부 · 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「가족관계의 등록

<신 설>

② (생략)

제14조(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)
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
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
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
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
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
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
대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
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
적 양육비 긴급지원(이하 "긴급지원"이라 한다)을 신청할
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원을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및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일한

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 족관계등록전산정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양육
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양육 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

② (현행과 같음)<삭 제>

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 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 지원의 지급기간은 9개월을 넘 지 아니하여야 하고, 자녀의 복 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 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- ④ 긴급지원의 대상, 금액,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긴급지 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 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 정한다.
-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,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 제14조의2(긴급지원 종료 등) ①

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

 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

<삭 제>

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.

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 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 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 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 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의3(긴급지원 결정에 관한 | <삭 제> 이의신청 특례) ① 이행관리원 의 장은 긴급지원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 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 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 례 연장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

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 다.

제14조의4(비용환수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양육비의 반환 기간,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(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제16조(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에 관한 조사) ① (생 략) 에 관한 조사) ① (현행과 같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, 건강보험·국민연금, 출입국 등에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

<삭 제>

•				—	_
에	관한	조사)	1	(현행과	같
흥)					
2					

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~ ⑤ (생 략)

제17조(금융정보등의 제공)<신</th>제17조(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설>보등의 제공)① 여성가족부장

------. ----<u>제21조의6에</u> 따라 양육비가 지급된-----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·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에 대한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포함한다)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.

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

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 하여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 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 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 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 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「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

<u> 2. '신흥성모의 이흥 및 모오</u>
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
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
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자료 또는 정보
3. 「보험업법」 제4조제1항 각
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
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
정보
<u> </u>

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 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금융정보·신 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를 제공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·보험정보를 요 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도불구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 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

<u>금융정보등을</u>
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가 지
급된 경우
양육비 채무자의 금융
<u>정보등을</u>
③ 제2항에
<u>④</u> 제3항

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7 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 니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 용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 신망(이하 "정보통신망"이라 한 다)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제1항,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로 정한다.

<신 설>

⑤ 제2항 및 제3항
<u>⑥</u> 제1항부터 제3항까지
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
<u>5항</u> 금융정보등의 동의, 제
<u>공 요청</u>
제3장의2 양육비 대지급

<신 설>

제21조의6(양육비 대지급) ① 제1
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
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
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
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
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
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
게 양육비 대지급(이하 "대지급"이라 한다)을 신청할 수 있
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대지급 신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대지 급은 미성년 자녀가 「민법」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 까지 지급할 수 있다.
- ④ 대지급의 신청 방법·절차, 제2항에 따른 대지급 결정의 통지 방법 및 금액,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대지급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 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.
-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대지급을

<신 \_설>

<신 설>

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,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제21조의7(양육비 대지급 종료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 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 면 그 즉시 대지급을 종료하여 야 한다.

-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대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의8(대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) ① 제21조의6에 따른 대지급에 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

<신 설>

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는 그 이의신 청과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 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21조의9(양육비 대지급금의 반환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대지급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반환 금액을 감결할 수 있다.

제23조(수수료) ① · ② (생략) <신 설>

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, 양육비 채권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 지급 양육비의 반환절차 및 방 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3조(수수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  -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사용료,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.

    1. 제10조, 제10조의2, 제11조, 제21조의6의 지원 신청에 필요하 서류의 「저자저부병
    - 제21조의6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관한 사항
  - 2.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・모

    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

    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

제24조(업무의 위탁) ① 여성가족 제24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 탁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 <신 설>

4. • 5. (생략) 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략) <신 설>

- 3.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 자의 재산 등 조사에 관한 사 항
- 4.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 등 의 제공에 관한 사항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의 <u>파기에</u> 관한 사항
- 4. 5. (현행과 같음)
- 6.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7.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8.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 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26조의2(권리의 보호) 제21조의 6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에게

- 제27조(벌칙) ① <u>제17조제5항</u>을 저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·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(생략)
  - 2. 「가사소송법」 제68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 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 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. 다만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<u><신 설></u>

지급된 양육비와 이를 받을 권
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
할 수 없으며, 압류 대상으로
<u>할 수 없다.</u>
Ⅱ27조(벌칙) ① <u>제17조제6항</u>
②
<u>.</u>
1. (현행과 같음)
2. 「가사소송법」 제64조제1항
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
<u>0</u> ]
행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
이 내
<u>.</u>
<u>.</u>
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
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금을
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

 비 대지급금을 받게 한 자는 1

 년 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

 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